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1.26)

#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종율]

# 목 차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3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4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 -----	1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6. 1.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6. 1. 11.

## 2. 개정이유

-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함에 따른 본청과 사업소 정원을 변경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조정
    - 현행 : 598명(본청276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5명, 읍36명, 면136명)
    - 조정 : 598명(본청278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3명, 읍36명, 면136명)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30. ~ 12.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7.]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4.7., 일부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6. 1.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6. 1. 11.

##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조항 변경 (안 제4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 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내용 반영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작성요령 “주민등록번호란 설명”

삭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안 제14조,  
안 제18조)

○ 자 ⇒ 사람, 범위 안에서 ⇒ 범위에서

라.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도록 함(별지 제5호 서식)

○ 지번 ⇒ 도로명과 건물번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투표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20. ~ 12.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 □ 「주민투표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6. 1.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6. 1. 11.

## 2.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1호, 제7호 서식)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 제16조의4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12.07. ~ 12.2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8.]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4.11.20.>]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6. 1. 1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6. 1. 11.

### 2. 요구이유

-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장애인근로사업장 지붕과 제1주차장, 제2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신원면 복지영농조합에서 부지사용 신청이 있어
- 주차장 기능은 현황과 같이 유지하고 잔여부지 사용에도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공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임.

### 3. 재산의 표시 및 설치계획도

- 재산의 표시

위 치	면 적	태 양 광 설 치 면 적	용 량	사용허가신청자
남상면 대신리 1546(장애인근로사업장)	1,236㎡	618㎡	90kw	신원1복지영농조합 대표 곽준섭
남상면 대신리 1564(제1주차장)	4,387㎡	576㎡	90kw	신원2복지영농조합 대표 박문규
남상면 대신리 1603(제2주차장)	3,089㎡	569㎡	90kw	신원3복지영농조합 대표 김운용

- 설치계획도 : 별지 참조

##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1항 3호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제4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 공유재산인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과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두 곳의 주차장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대명지이씨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 후 기부하여 발전소주변지역인 남상면, 신원면 주민이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면민복지에 사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등 상위법령 및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군유재산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

#### 1 추진배경

-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대명지이씨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발전소주변지역(남상면, 신원면 해당) 주민이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게 기부
- 남상면, 신원면은 기부 받은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면민복지에 사용
- 우리 군에서는 남상면 신원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 2 태양광 발전소설치 계획

- 남 상 면 : 250kw
  - 거창축산업협동조합 소유 우시장 지붕에 설치계획 : 협의완료
- 신 원 면 : 270kw(공유재산 임대)

위 치	면 적	태 양 광 설치면적	용량	사용허가신청자
남상면 대신리 1546(장애인근로사업장)	1,236㎡	618㎡	90kw	신원1복지영농조합 대표 곽준섭
남상면 대신리 1564(제1주차장)	4,387㎡	576㎡	90kw	신원2복지영농조합 대표 박문규
남상면 대신리 1603(제2주차장)	3,089㎡	569㎡	90kw	신원3복지영농조합 대표 김운용

## 3 검토사항

- 장애인근로사업장 구조검토 결과 : 안전통보
  - ※ 구조검토(15.12.2) : 찬구조엔지니어링 박우철 건축구조기술사
- 산업단지 제1, 2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주차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

## 4 향후계획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2항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시 거창군의회 동의필요

##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



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 용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 할 수 있으며, 임대요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3.7.30>